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72
----------	-------

발의연월일 : 2025. 7. 15.

발 의 자 : 차규근 · 신장식 · 강경숙
서왕진 · 김준형 · 김선민
황운하 · 정춘생 · 김재원
이해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의 증감이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물가가 상승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5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구간별 근로장려금에 물가조정계수(기준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을 말한다)를 적용하여 제5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고, 조정된 근로장려금산정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물가조정계수의 산정 및 적용 방법, 근로장려금산정표의 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6제10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에는 제100조의5제6항에 따라 고시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1제1항 전단 중 “제2항 및 제5항은”을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으로 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구간별 근로장려금에 물가조정계수(기준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을 말한다)를 적용하여 제5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고, 조정된 근로장려금산정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⑦ <u>제6항에 따른 물가조정계수의 산정 및 적용 방법, 근로장려금산정표의 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 ⑨ (생 략) ⑩ <u>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u>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⑪ · ⑫ (생략)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신청·결정·환급 및 환급의 제한·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

----- . 이
경우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에
는 제100조의5제6항에 따라 고
시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포
함하여야 한다.

⑪ · ⑫ (현행과 같음)

[illegible]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② (생략)	----- -----. ----- -----. ② (현행과 같음)
---	---